

37. 국민연금기금

1. 기금개요

|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설 치 근 거 | 국민연금법 제 101조 | | |
| 설 치 년 도 | 1988년 | 운용개시년도 | 1988년 |
| 주 무 부 처 | 보건복지부 | 기금관리주체 | 보건복지부 |
| 관 리 방 식 | 위탁관리 | 위탁관리기관 | 국민연금공단 |

2. 평가 요약표

| 평 가 결 과 | 준 치 |
|---------|---|
| 개 선 사 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지타운 사업은 실효성이 낮으므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함. ○ 노후연금자금대부 사업 중 전월세 대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업과 중복되므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. ○ 회관확보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다 정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. |

3. 존치평가 총평

-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「국민연금법」에 의하여 설치되었고,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및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채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지급, 복지타운 운영, 노후긴급자금대부, 회관확보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.
- 본 기금은 연금급여지급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적정성이 인정된다. 그러나 복지타운 사업은 실효성이 낮으므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. 노후긴급자금대부 사업 중 전월세 대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업과 중복되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. 회관확보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다 정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.
- 본 기금의 2012년도 지출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350.4%이고, 총 기금조성액 중 차입금 및 정부출연금의 비중은 0.01%로 매우 미미하므로 재원구조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.

4. 세부항목별 평가결과

① 개별사업의 적정성

| 사업명 | 평가결과 | 근거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| 통합 |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월세 보증사업과 중복됨 |

①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

- 연금급여지급 사업은 국민연금기금의 고유 사업으로 설치목적 및 추진근거가 명확함.
 - 사업의 중장기 운용비전과 방향도 당초의 설치목적과 부합함.
 - 현재로서는 사업의 설치목적인 연금급여지급에 문제가 없음.
- 복지타운운영 사업은 국민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설치목적 및 추진근거가 명확함.
 - 실물복지 혜택과 관련된 중장기 비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.
 -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실물복지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호텔 2개동 276실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, 수익률도 매우 저조함.
 - 따라서 중기적으로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종료를 사전 전제하거나 가격이 일정수준을 상회 혹은 화회할 경우 매각하는 원칙 등을 세워 중장기적으로 매각을 고려하고, 국민연금기금의 고유목적인 연금급여지급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노후긴급자금대부 사업은 국민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설치목적 및 추진근거가 명확함.

- 그러나 사업추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이 불투명하며,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총사업규모가 정해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.
- 노후긴급자금은 긴급구호 자금을 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.
- 회관확보 사업은 국민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회관을 확보할 수 있으나, 이것을 사업단위로 보는 것은 부적절함.
- 현재 회관개수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으나, 그와 같은 계획의 보다 엄밀한 정당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② 사업 주체의 적합성

- 연금급여지급 사업의 주체는 적정함.
- 국민연금기금의 고유사업인 연금급여지급 사업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③ 사업의 중복성·유사성

- 노후긴급자금대부 사업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음.
- 특히, 전월세 자금 대부는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타 기관도 실시하고 있음.
- 중복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.

2. 재원구조의 적정성

①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

<표1> 주요 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

(단위 : 억원, %)

| 자체수입 (A) | 지출(B) | | | 비중 (A/B) | 평가결과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| 기금운영비 | 사업비 | 차입금이자상환 | | |
| 435,893 | 4,070 | 120,335 | 0 | 350.38% | 적정 |

※ 2013년 기금준치보고서 제출자료 참고

<표2> 2012년 조성액 대비 차입금 및 정부출연금 비중

(단위 : 억원, %)

| 차입금 (A) | 정부출연금 (B) | 조성액 (C) | 비중 (A+B)/C | 평가결과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
| 0 | 107 | 792,307 | 0.01% | 적정 |

※ 2013년 기금존치보고서 제출자료 참고

- <표1>에서 보듯이, 국민연금기금의 2012년도 지출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350.4%로 적정한 규모임.
- <표2>에서 알 수 있듯이, 총 기금 조성액 중 차입금 및 정부출연금의 비중은 0.01%로 매우 미미하므로 적정으로 판정됨.

②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

- 해당사항 없음.

③ 기금존치의 타당성

① 기금목적의 유효성

- 해당사항 없음.

② 타 기금과의 중복성·유사성

- 해당사항 없음.

③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

- 해당사항 없음.